의안번호	2216218
의 뢰 인	윤준병의원
회 답 일	2026.5.7.
추계번호	26D03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비례대표시·도의원 비율을 15%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8억 9,200만원, 2030년 76억 4,9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274억 2,700만원(연평균 54억 8,5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지선)	2027	2028	2029	2030 (지선)	합계	연평균
비례대표시·도의원 비율 상향 조정 (안 제22조제5항)	4,892	4,856	4,961	5,069	7,649	27,427	5,485

주: 1.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2. 비례대표시·도의원 비율 상향 조정(안 제22조제5항)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이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수, 평균 선거비용 보전액, 기탁금 국고 귀속률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로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2조 (시·도의회의 의원정수)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 관할구역 내 하나의 자치구・시・군을 대표하는 지역구시・도의원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정수 산정 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도 고려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인구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함	의무규정
2	안 제22조제5항 (시·도의회의 의원정수)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5으로 하고, 이 경우 단수는 1로 봄	의무규정
3	안 제23조제3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0분의 15로 하고, 이 경우 단수는 1로 봄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22조제1항·제2항 (시·도의회의 의원정수)	X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시·도의 범위, 구체적인 조정 정수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2	안 제22조제5항 (시·도의회의 의원정수)	○	-
3	안 제23조제3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	자치구·시·군의원의 총 정수 내에서 비례대표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의원정수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비례대표시·도의원 비율 상향 조정에 한하여 추계하며, 개정안에 따라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32명의 비례대표시·도의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에 15%를 적용하고 단수를 1로 하여 산출한 결과, 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비례대표시·도의원 정수는 32명으로 추정

❑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는 매년 지출되는 시·도의원의정활동 관련 비용[1]과 정책지원관 관련 비용,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기탁금 수입과 선거비용보전액을 포함

○ 본 추계에서는 시·도의원의 연령을 모두 60세 미만으로 가정하여 국민연금을 추계기간 동안 계속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

1)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기관부담금, 기본경비(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의장협의체 부담금을 포함)

○ 정책지원관의 경우,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고, 일반직지방공무원 6급과 7급 이하로 채용[2)]

○ 이에 본 추계에서는 시·도의원 2명 당 1명의 일반임기제 지방공무원 6급에 해당하는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3)]

❑ 개정안 부칙에서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의 비용추계 대상은 비례대표시·도의원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지원관 보수 지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와 관련된 기탁금 수입과 선거비용보전액

❑ 본 추계에서는 각 항목별 인원과 1인당 비용 등을 곱하여 재정소요와 재정수입을 산출하여 최종적으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의정활동)** 증가되는 비례대표시·도의원 수에 1인당 비용을 곱하여 산출

○ **(인원)** 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비례대표시·도의원은 32명

○ **(1인당 비용)** 비례대표시·도의원 1인당 비용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기관부담금, 기본경비(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의장협의체 부담금을 포함), 자산취득비(2026년에만 발생)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6.3)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3%	2.1%	2.3%	2.0%	2.0%	2.0%

를 말함

- 추계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는 동일하고, 월정수당은 2025년 증가율 2.3%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기본경비는 인건비성 경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대비 기본경비 비율 40.4%[4]를 적용하여 산출
- 기관부담금은 월정수당에 요율[5]을 곱하여 산정하고, 자산취득비는 2026년에만 발생하며 1인당 498만원 적용(국회예산정책처 전망값)

[표 2] 비례대표시·도의원 1인당 비용(연간) 추정: 2026~2030년

(단위: 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의정활동비(a)	2,400	2,400	2,400	2,400	2,400
월정수당(b)	4,405	4,506	4,610	4,716	4,824
기관부담금(c=b×기관부담금요율)	600	630	662	696	732
기본경비(d=(a+b)×기본경비 비율)	2,225	2,258	2,292	2,327	2,362
1인당 비용(=a+b+c+d)	9,630	9,795	9,964	10,139	10,318
자산취득비	498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정책지원관)** 비례대표시·도의원 증가에 따른 정책지원관 인원에 1인당 비용을 곱하여 산출

○ **(인원)** 비례대표시·도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두므로 개정안에 따라 16명 증원

- 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비례대표시·도의원 수는 총 32명이므로 정책지원관은 16명을 두는 것으로 가정

○ **(1인당 비용)**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 지방직공무원 6급으로 채용하며 1인당 비용은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를 말함

- 일반임기제 지방직공무원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자로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에 따른 연봉하한액의 120%를 적용[6]

4) 내고장알리미의 의회운영 관련 2025년 기준 예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

5)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고용 및 산재보험은 해당하지 않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요율(장기요양보험 포함)을 합쳐 2026년 8.816%, 2027년 9.13%, 2028년 9.444%, 2029년 9.786%, 2030년 10.130%

- 수당은 가족수당(배우자와 자녀 1명 기준, 월 90,000원) 및 특수업무수당(지방의회사무기구 근무공무원에게 지급), 실비변상은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반영
- 연가보상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함

[표 3] 일반임기제 지방직공무원(6급) 보수: 2026년 기준

(단위: 천원)

	봉급	수당	실비변상	합 계
일반임기제 지방직공무원(6급)	69,250	1,800	4,140	75,190

자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6년 기준 보수는 추계기간 동안 최근 3년(2024~2026년)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 3.0%에 따라 상승
- 기관부담금은 보수에 요율[7], 기본경비는 보수에 20.5%[8]를 곱하여 산출하고 자산취득비는 2026년에만 발생하며 1인당 498만원 적용(국회예산정책처 전망값)

[표 4] 시·도의회 정책지원관(6급) 1인당 비용(연간) 추정: 2026~2030년

(단위: 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보수(a)	7,519	7,745	7,977	8,216	8,463
기관부담금(b=a×기관부담금요율)	983	1,017	1,052	1,092	1,132
기본경비(c=a×기본경비 비율)	1,957	2,003	2,051	2,100	2,151
1인당 비용(=a+b+c)	10,458	10,765	11,080	11,408	11,746
자산취득비	498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3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도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은 해당 직무의 종류·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7)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의 기관부담금요율은 2026년 13.067%, 2027년 13.129%, 2028년 13.193%, 2029년 13.285%, 2030년 13.379%

8)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서 인력운영비(39조 6,999억원) 대비 기본경비등(8조 1,503억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5%

❑ **(선거비용보전액과 기탁금 수입)**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2026년과 2030년에만 발생하며 비례대표 후보자 수는 78명으로 가정하고, 1인당 기탁금 귀속액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며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

○ 후보자 수는 직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비례대표시·도의원 정수 대비 후보자 수 비율(2.45배)를 활용하여 추정하면 78명

○ 비례대표시·도의원 후보자 중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후보자 수의 비율은 38.6%이고 국고에 귀속되는 1인당 기탁금은 252만원[9)]

○ 비례대표 후보자의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2,722만원[10)]이며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국회예산정책처 전망값)에 따라 상승

[표 5] 비례대표시·도의원 후보자의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과 기탁금 수입 추정: 2026~2030년

(단위: 만원)

구분	2026 (지선)	2027	2028	2029	2030 (지선)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	3,014	-	-	-	3,261
1인당 기탁금 귀속액	252	-	-	-	25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9) 기탁금 반환 대상이 되지 못한 비례대표 후보자 88명의 총 귀속액은 2억 2,170만원으로 1인당 약 252만원

10)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비례대표시·도의원에 대한 선거비용보전액은 총 62억 659만원이고 후보자 수는 228명으로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은 약 2,722만원으로 추정

❑ 추계결과, 비례대표시·도의원 비율을 15%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8억 9,200만원, 2030년 76억 4,9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274억 2,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비례대표시·도의원 비율 상향 조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지선)	2027	2028	2029	2030 (지선)	합계
의정활동	인원(a, 명)	32	32	32	32	32	–
	1인당 비용(b, 만원)	4,815	9,795	9,964	10,139	10,318	–
	연간 비용(c=a×b, 백만원)	3,371	6,857	6,975	7,097	7,223	–
	자산취득비(d=a×498만원, 백만원)	159	–	–	–	–	–
	소계(e=c+d, 백만원)	**1,700**	**3,134**	**3,188**	**3,244**	**3,302**	**14,568**
정책지원	인원(f, 명)	16	16	16	16	16	–
	1인당 비용(g, 만원)	5,229	10,765	11,080	11,408	11,746	–
	연간 비용(h=f×g, 백만원)	837	1,722	1,773	1,825	1,879	–
	자산취득비(i=f×498만원, 백만원)	80	–	–	–	–	–
	소계(j=h+i, 백만원)	**917**	**1,722**	**1,773**	**1,825**	**1,879**	**8,116**
선거	후보자 수(k, 명)	78	–	–	–	78	–
	1인당 선거비용보전액(l, 만원)	3,014	–	–	–	3,261	–
	보전액(m=k×l 백만원)	**2,351**	**–**	**–**	**–**	**2,544**	**4,895**
	1인당 기탁금 귀속액(n, 만원)	252	–	–	–	252	–
	기탁금 수입(o=k×n, 백만원)	**76**	**–**	**–**	**–**	**76**	**152**
추가재정소요(=e+j+m−o, 백만원)		**4,892**	**4,856**	**4,961**	**5,069**	**7,649**	**27,427**

주: 2026년 의정활동 및 정책지원관 항목의 경우,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므로 연간 지급액은 6개월치만 산정하였고, 선거항목의 기탁금 수입은 후보자 수(k)에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후보자 비율 38.6%(비례대표 시·도의원 기준)와 1인당 기탁금 귀속액(n)을 곱하여 산출함

Ⅳ.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수, 평균 선거비용 보전액, 기탁금 국고 귀속률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로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